

[별표 1] <개정 2001.6.30>

법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(제2조 관련)

구 분	기 관 장
1.입 법 부 2.행 정 부	국회사무총장·국회도서관장 가.감사원장·대통령비서실장·대통령경호실장·국가정보원장·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·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나.국무조정실장·국무총리비서실장·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·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·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·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·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다.중앙행정기관의 장 라.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) 마.대학교 및 대학의 장, 전문대학의 장 바.교육감·교육장
3.사 법 부	법원행정처장, 각급 법원 및 법원지원의 장
4.헌법재판소	사무처장
5.선거관리위원회	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,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